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2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이종배·김정재·강대식

김용태 • 박대출 • 윤영석

유용원 · 송언석 · 김성원

이상회 · 김선교 · 성일종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(이하 전상군경 등)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~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~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상이등급 1~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제1항). 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4호 중 "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"를 "사람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전에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12조(보상금) ① 다음 각 호에	제12조(보상금) ①	
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		
지급한다. 다만, 이 법 또는 다		
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		
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		
하지 아니하다.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
4. 제1호에 해당하는 <u>사람 중</u>	4사람이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		
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		
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		
위자 1명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